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6년 상담사례발표회

일시 :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14시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행사 개요 ...

일시 : 2016년 10월 11일 (화), 14시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층

	내용
14:00	· 선언 · 인사 및 축사
14:15	· 통계자료 발표
14:25	· 사례 발표 (상담자 사례 발표)
14:50	· 의견 발표 (법률 자문 의견 발표)
14:55	· 발표 내용 정리 · 폐회
15:00	· 기념촬영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6년 상담사례집

... 목 차 ...

1. 상담 활동 개요	2
1) 상담 활동	2
2) 상담 절차	4
2. 상담 통계	5
1) 상담형태별 통계	5
2) 성별 통계	6
3) 연령별 통계	7
4) 고용형태별 통계	8
5) 직종별 통계	11
6) 처리결과별 통계	13
7) 상담항목별 통계	14
8) 상담분야별 통계	16
3. 유형별 상담 사례	18
1) 부당 해고	18
2) 임금 체불	21
3) 청소년	24
4. 부록	27
1) 임금체불진정 절차	
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3)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절차	

1. 상담 활동 개요

1) 상담 활동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5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화, 내방, 출장, 인터넷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내방, 인터넷(센터 홈페이지)로 상시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자가 상담을 원하지만 내방이 어려운 경우 센터 상근자가 직접 현장 인근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동상담은 2015년 7월 30일 ~ 12월 8일, 2016년 3월 2일 ~ 7월 21일까지 매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은행동 스카이로드와 지하상가, 대전역, 시청 앞, 지족동, 둔산동 타임월드 앞 등에서 센터 홍보와 현장 상담을 하고, 5월~6월에는 한남대, 충남대, 대전대, 배재대 등에서 최저임금 홍보 캠페인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센터의 개소 이후 대전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저희 센터를 알리기 위해 대전 전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생활정보지와 버스안내 단말기 홍보문구 게시, 주민자치센터에 전단지과 리플렛 배포, 홍보물품 제작 배포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홍보의 결과로 현재까지 월 평균 4~50건의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센터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센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양질의 상담을 위해 센터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림 1

2015년 이동상담 현황

구분	상담일자	장소
1	07월 30일	으능정이거리
2	08월 27일	시청역사 내
3	09월 02일	중앙과학관 정문 앞
4	09월 09일	중앙과학관 정문 앞
5	09월 16일	철도사옥(대전역동광장)
6	09월 19일	은행동 중앙로
7	09월 23일	철도사옥(대전역동광장)
8	09월 30일	시청 북문 앞 버스정류장
9	10월 07일	시청 북문 앞 버스정류장
10	10월 22일	한국전력연구원 앞
11	10월 29일	지족역
12	11월 04일	지족역
13	11월 12일	지족역
14	11월 19일	지족역
15	12월 08일	충대앞

그림 2

2016년 이동상담 현황

구분	상담일자	장소
1	03월 02일	대전 시청 북문 버스정류장
2	03월 09일	대전 시청역 앞
3	03월 16일	대전 시청역 앞
4	03월 23일	대전 시청역 앞
5	04월 14일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앞
6	04월 22일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앞
7	04월 29일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앞
8	04월 30일	시청 남문 앞 보라매공원
9	05월 16일	한남대 후문
10	05월 19일	대전대 서문
11	05월 23일	배재대 정문
12	05월 26일	충남대 쪽문
13	06월 09일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14	07월 07일	중앙로 지하상가 무대공연장
15	07월 21일	중앙로 지하상가 무대공연장

2) 상담 절차

상담은 유선 상담, 내방 상담,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이동 및 출장 상담을 통해 활동을 했습니다. 각각의 접점에서 상담 내용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근거 사실, 판례와 사례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구제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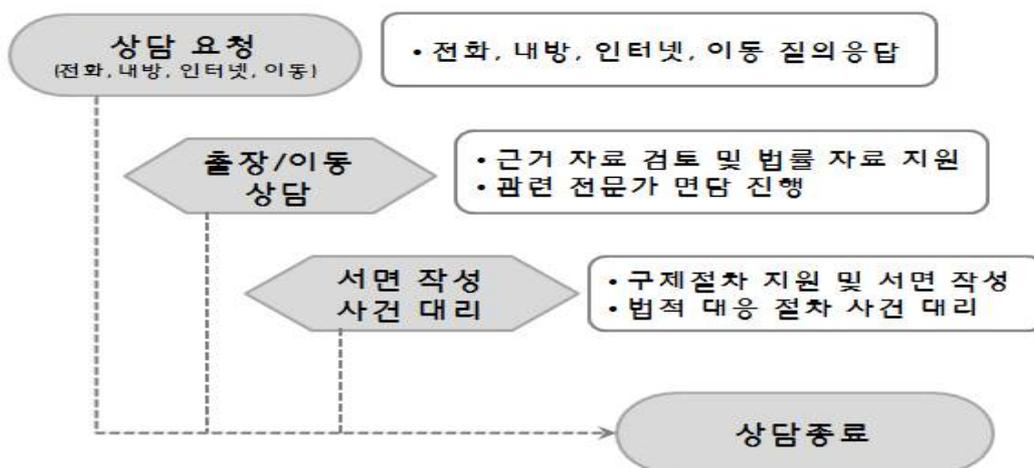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재 신청, 사업주와의 합의 절차 중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근거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하고, 법률적 자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센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담내용인 경우에는 협약 기관 및 유관 기관과 접촉하여 상담자와의 상담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연령이 높은 상담자의 경우 진정서 및 신청서 등의 서면 작성을 돕고, 대응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유선과 출장, 내방 상담을 통해 진행 경과를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자가 법적 대응을 하고 싶으나 법률적 지식이나 개별적 판단을 통해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사건을 대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림 3



2. 상담 활동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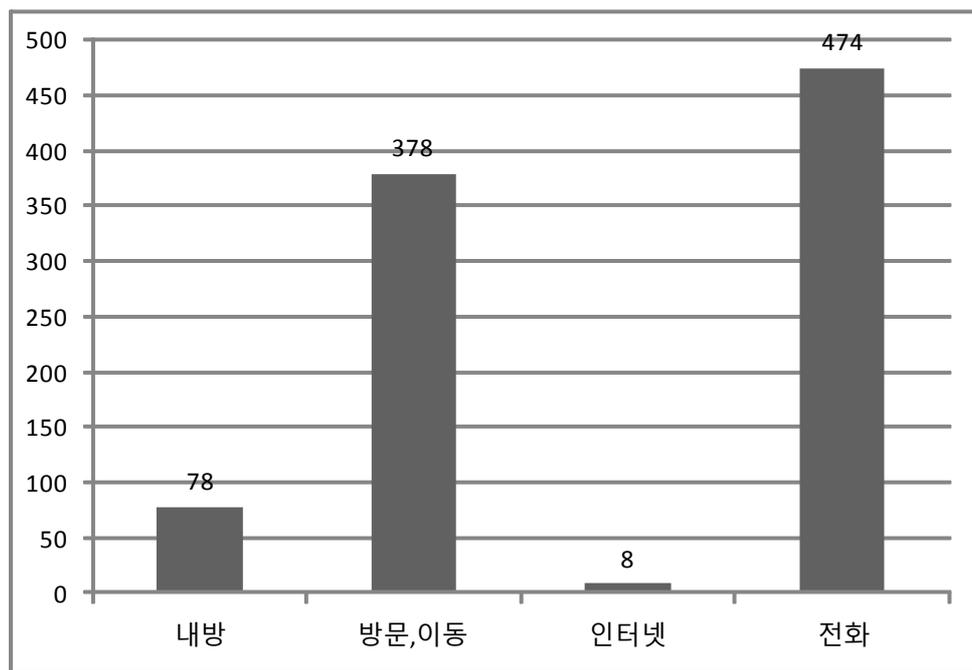
1) 상담형태별 통계

2015년 8월1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1년 동안 총 598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전화상담이 474건이 79.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내방 상담이 78건, 출장 상담이나 이동상담은 37건이고, 센터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진행한 인터넷 상담이 8건이었습니다.

표 2 상담형태

전화	내방	출장(방문,이동)	인터넷	총계
474 (79.3%)	78 (13.0%)	37 (6.2%)	8 (1.3%)	598 (100%)

그림 4 상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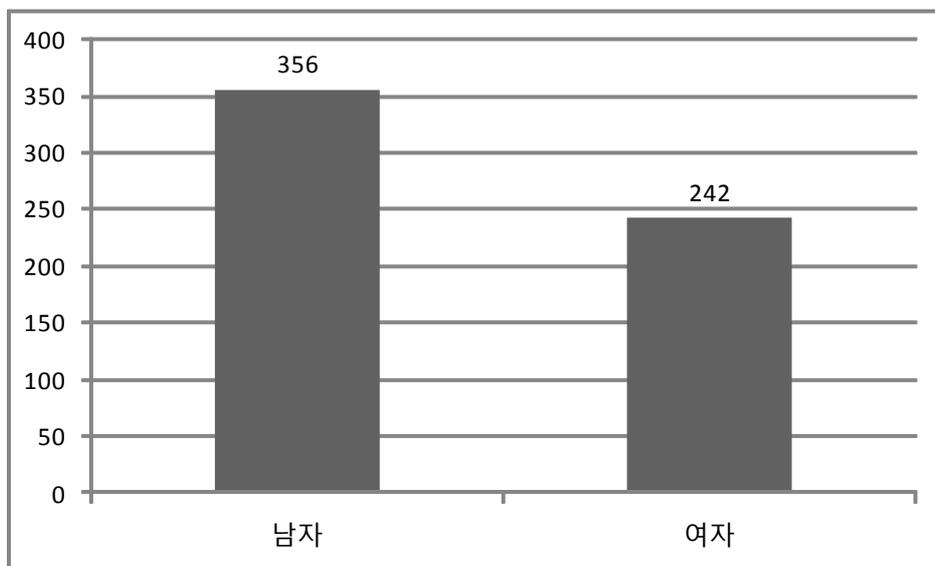
2) 성별 통계

상담자의 성별부문 비율은 남성이 356명, 여성이 2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 성별

남성	여성	총계
356 (59.5%)	242 (40.5%)	598 (100%)

그림 5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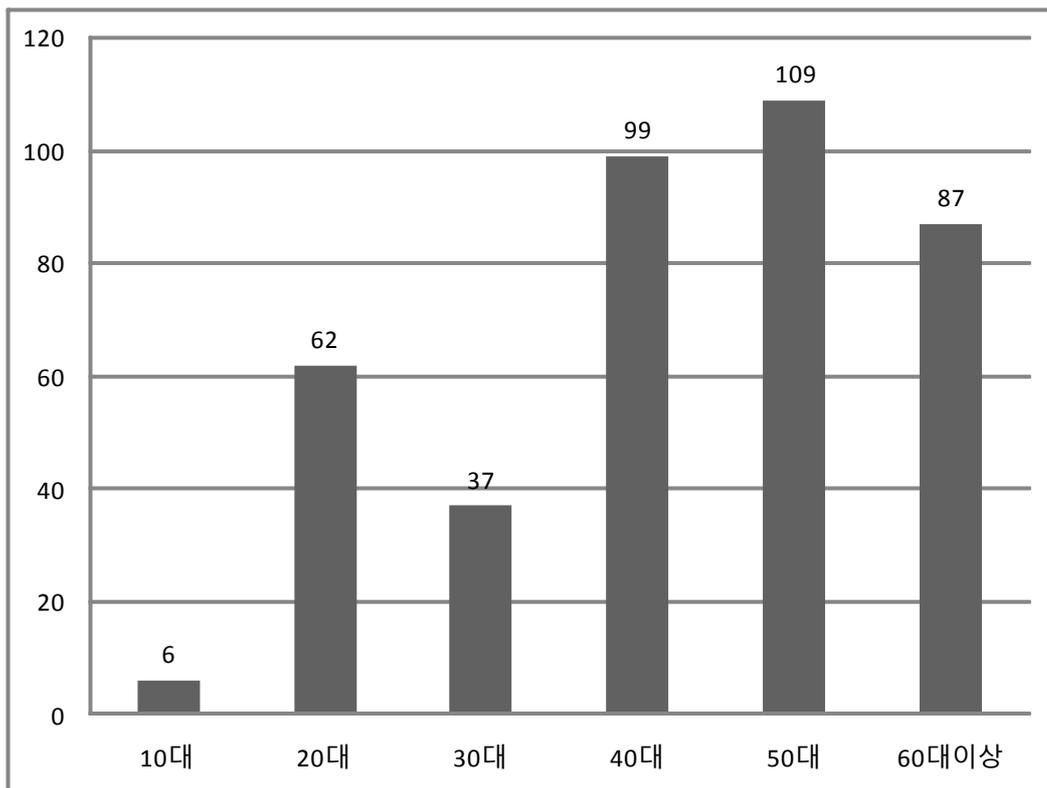
3) 연령대별 통계

연령별 상담건수는 50대이상의 고령층이 무응답을 제외한 상담자중 4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40대 장년층과 2,30대 청년층에서도 각각 24.8%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4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5 (1%)	62 (10.4%)	37 (6.2%)	99 (16.6%)	109 (18.2%)	87 (14.5%)	598 (100%)

그림 6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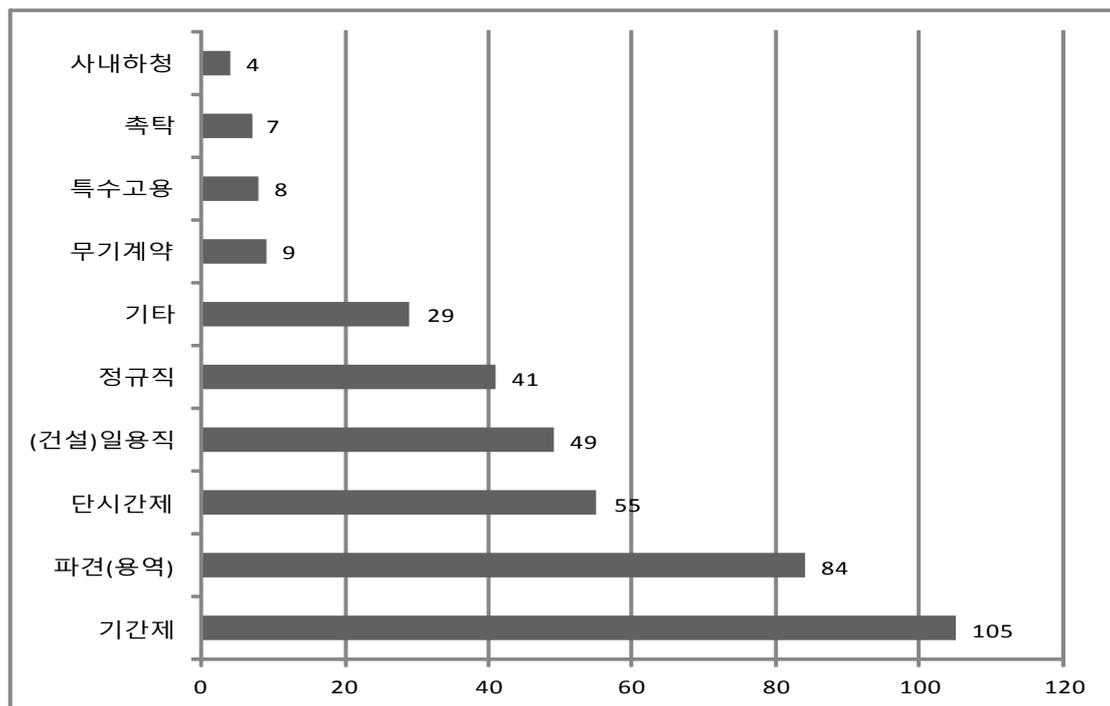
4) 고용형태별 통계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견/용역이 82건, 단시간제가 55건, 일용직이 51건순이었습니다. 고용형태가 기타인 경우에는 지입차량의 수탁사업자, 택시 도급 계약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사업주등이 있었습니다.

표 5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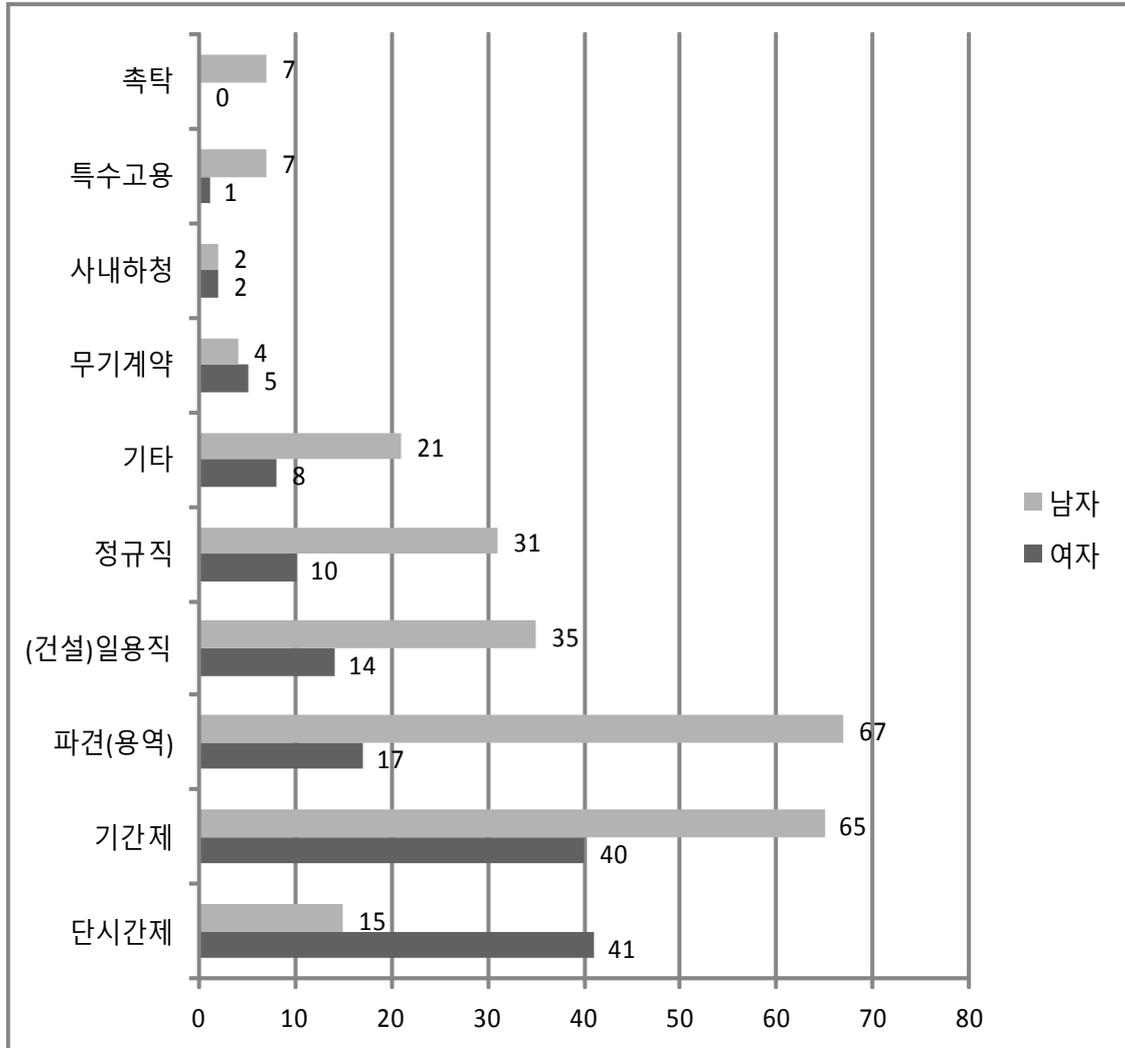
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용역)
41 (7%)	9 (1.5%)	105 (17.6%)	55 (9.2%)	84 (14%)
사내하청	특수고용	(건설)일용직	재택	가내
4 (0.7%)	8 (1.3%)	49 (8.2%)	0	0
축탁	기타	무응답	총계	
7 (1.2%)	29 (4.8%)	207 (34.6%)	598 (100%)	

그림 7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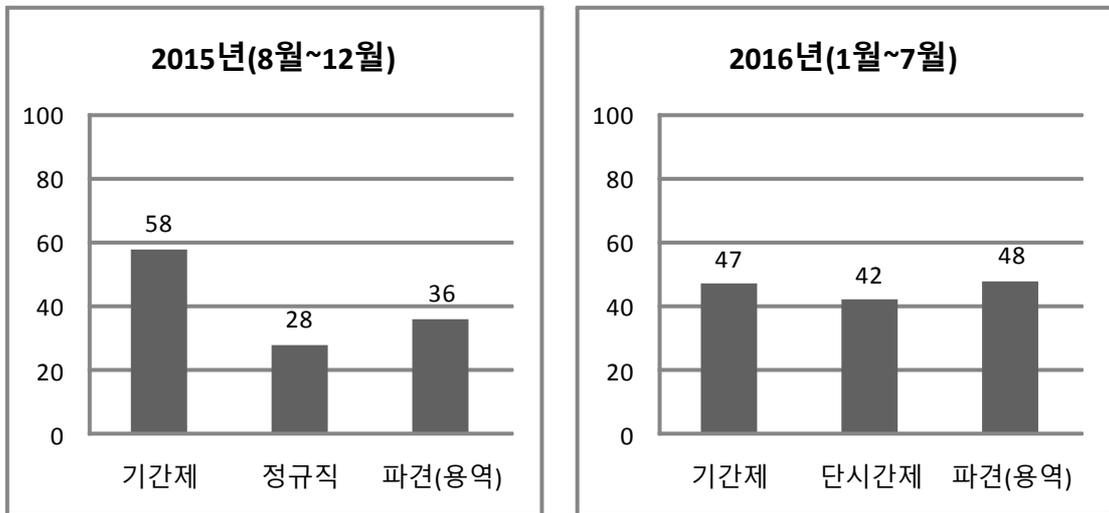
남녀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를 보면 여성은 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용역)순으로, 남성은 파견(용역), 기간제, (건설)일용직순의 비율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림 8 성별_고용형태



연도별 고용형태는 2015년에 기간제(58건), 파견(용역)(36건), 정규직(28건)이 많았고, 2016년에는 파견(용역) 48건, 기간제 47건, 단시간제 42건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단시간제로 근무하는 청소년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상담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 장소가 대학가 주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사업장이 밀집된 주요 변화가 등이었고, 2016년 5월에 진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의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9 연도별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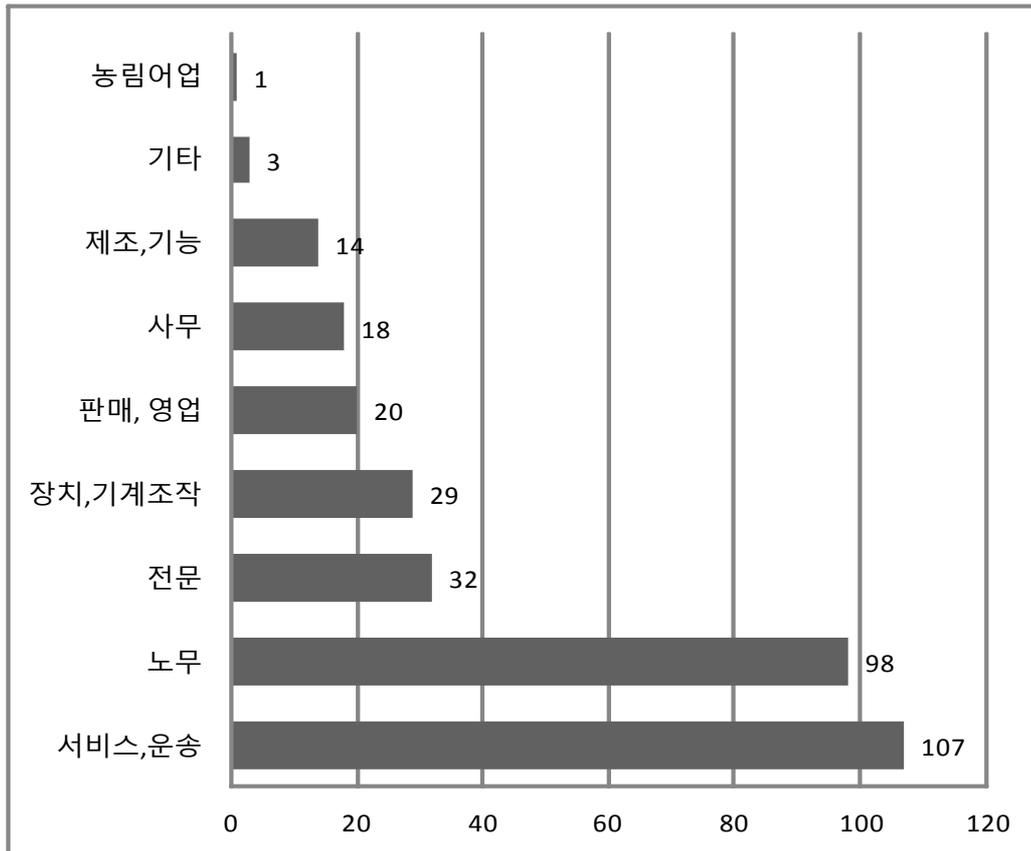
5) 직종별 통계

직종별 상담자의 경우 서비스직과 운송직 노동자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 경비등 일반 노무 제공 노동자가 98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그 외에 전문직이 32건, 장치, 기계조작이 29건, 판매, 영업이 20건과 사무직 18건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6 직종

관리	전문	사무	서비스,운송	판매,영업
0	32 (5.4%)	18 (3%)	107 (17.9%)	20 (3.3%)
농림어업	제조,기능	장치,기계조작	노무	기타
1 (0.2%)	14 (2.3%)	29 (4.9%)	98 (16.4%)	3 (0.5%)
무응답	총계			
276 (46.2)	598 (100%)			

그림 10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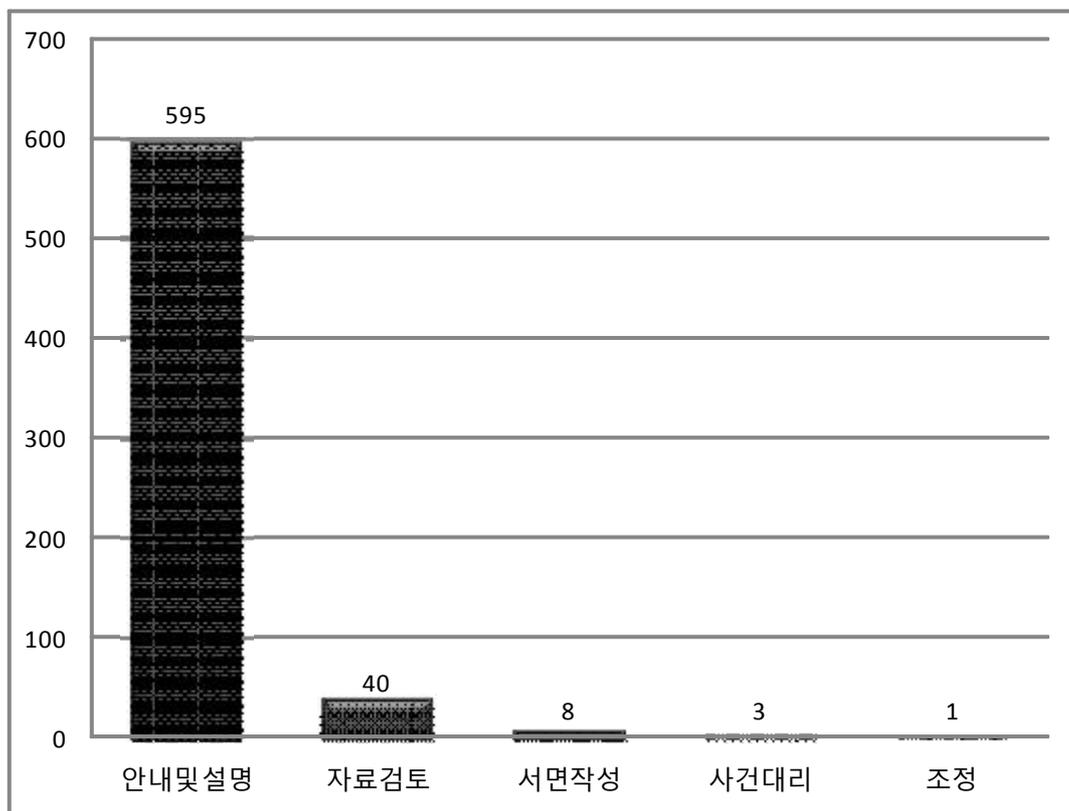
6) 처리결과별 통계

처리결과별로는 안내 및 설명이 595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자료검토가 40건이고, 서면작성이 8건, 사건대리 3건, 조정이 1건이었습니다.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사건대리 및 서면 작성 등의 보다 더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담건중에 한 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복수 체크하였습니다.

표 7 처리결과

안내 및 설명	조정	자료검토	사건대리	서면작성	의견서작성	총계
595 (92%)	1 (0.2%)	40 (6.2%)	3 (0.5%)	8 (1.2%)	0	647 (100%)

그림 11 처리결과



7) 상담항목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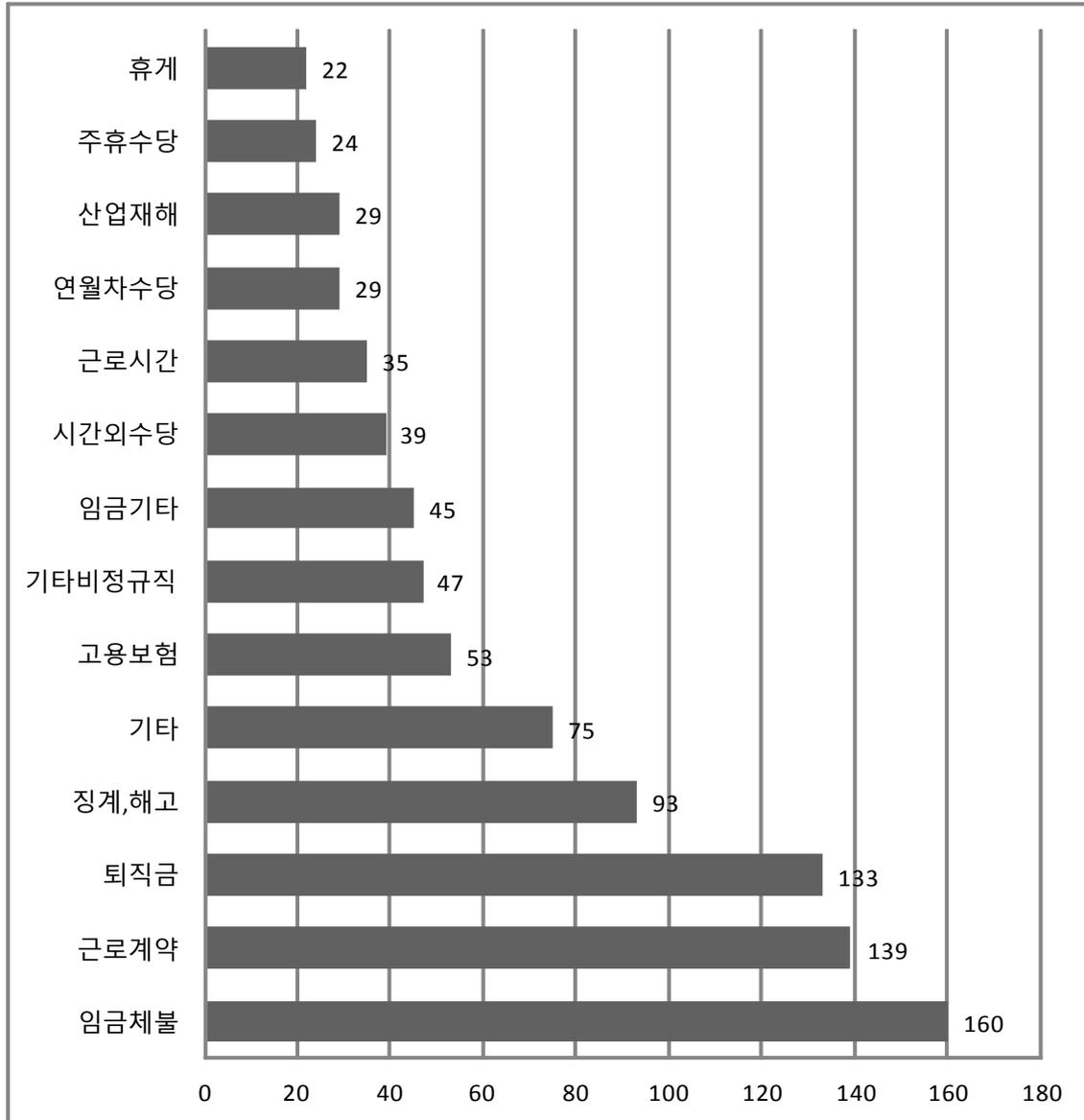
세부 상담분야별로 보면 임금체불 160건, 근로계약 139건, 퇴직금 133건, 징계/해고 93건, 기타가 75건, 고용보험이 53건입니다. 총 분야별 상담건수는 996건이며, 실제 총 상담건수 598건과 차이가 있는 것은 한 건의 상담 중에 여러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경우 상담분야를 복수 체크한 것입니다.

기타건의 경우에는 취업문의가 대부분이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사업소득세 관련문의, 구제절차 대리 선임시 노무사 수임료 문의, 업무중 비용처리 청구 문의 등이 있었습니다.

표 8

임금체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160 (16%)	39 (3.9%)	24 (2.4%)	29 (2.9%)	133 (13.6%)
임금 - 기타	휴게	휴일	근로시간	휴가
45 (4.5%)	22 (2.2%)	11 (1.1%)	35 (3.5%)	11 (1.1%)
징계,해고	인사이동	출산,육아	성희롱등	근로계약
93 (9.3%)	4 (0.4%)	3 (0.3%)	2 (0.2%)	139 (14%)
취업규칙	산안,산업재해	고용보험등	노조설립	노조운영
18 (1.8%)	29 (2.9%)	53 (5.3%)	9 (0.9%)	3 (0.3%)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단체행동 - 기타	부당노동행위
0	1 (0.1%)	0	1 (0.1%)	10 (1%)
기타	비정규직	총계		
75 (7.5%)	47 (4.7%)	996 (100%)		

그림 12 상담항목



8) 상담분야 통계

상담 분야별로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이 43.1%로 역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가 1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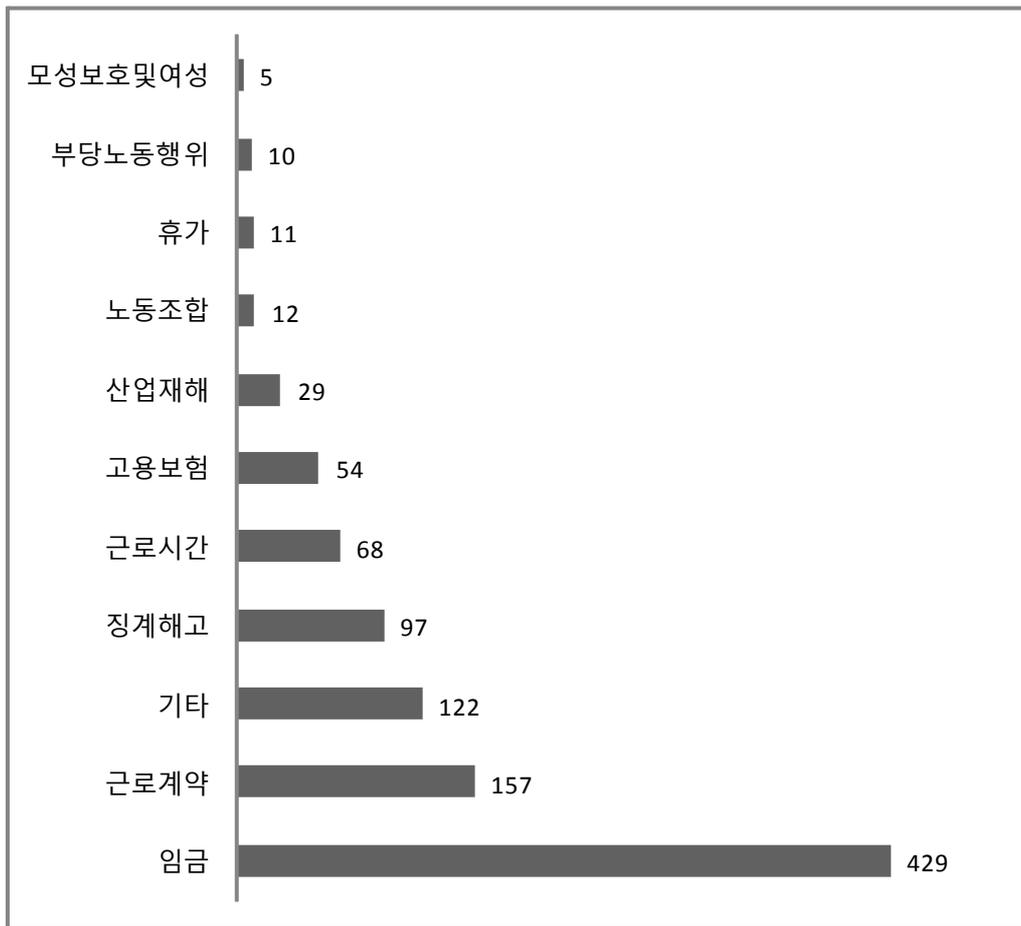
하나의 상담건에서 여러 가지 상담분야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체크하였습니다.

표 9 상담분야 통합

(단위 : 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429(43.1%)	68(6.8%)	11(1.1%)
징계해고	모성보호및여성	근로계약
97(9.7%)	5(0.5%)	157(15.8%)
산업재해	고용보험	노동조합
29(2.9%)	54(5.4%)	12(1.2%)
단체협약	단체행동	부당노동행위
1(0.1%)	1(0.1%)	10(1%)
기타	총계	
122(12.6%)	996	

그림 13 상담분야 통합



3. 상담 사례

1) 부당 해고

상담사례 1

성별	남자	나이	60세
상담일자	2016년 1월 26일		
상담 내용	<p>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함. 관리자가 아닌 동료에게만 통보했다고 무단결근이라 하여 해고통보 받음.</p> <p>오전 8시-3시. 3시-10시까지 두분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음.</p> <p>몸이 아파서 18일과 19일, 이틀을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못 나간다고 전화를 함. 관리자는 일본에 가 있어서 전화를 못함. 18일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4번 전화했고, 19일은 두번 했다. 20일에는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20일 새벽 5시 16분에 무단결근 3일이라서 해고한다는 내용 문자가 왔음.</p> <p>6년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해 본적이 없음. 몸이 너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한것이고 정신이 없을 정도라서 다른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지 못함.</p>		
상담 결과	<p>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설명.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면 작성.</p> <p>민주노총의 협조로 복직함.</p>		

상담사례 2

성별	남자	나이	60대
상담일자	2016년 1월 7일		
상담 내용	공공기관 용역소속 경비근로자로 부당해고 대응 문의		
	<p>공공기관의 경비업무, 상담 당일 야간근무 후 아침 7시 교대 직전에 2016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는 용역업체의 담당이사가 와서 경비업무직원 한명을 교체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음.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윗선에서 지시만 받았다고 모른다고 함.</p> <p>8시 근무 교대 후 원청의 담당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해 물었더니 직원들과의 불화를 야기하고, 불만이 많은 것이 사유라 함.</p> <p>도움 받을 수 있는 민주노총소속 노동조합과 추가 상담 진행. 1월 8일 일반지부에서 원청 담당자와 확인 및 시정 요청, 용역업체에 부당해고 시정 요구 공문 발송함.</p> <p>1월 11일 용역업체에서 내담자에게 익일부터 정상 출근하라 하여 전달함.</p>		
상담 결과	민주노총의 협조로 원청에 해고 상황에 대해 확인, 용역업체 시정 요구 후 복직함.		

상담사례 3

성별	남자	나이	20대
상담일자	2016년 4월 22일 (온라인 상담 후 내방)		
상담 내용	<p>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구제 문의</p> <p>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절차가 부적합하여 회사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부. 내규상 특별한 심사기준없이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정한다함. 계약 만료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예정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구제 절차에 필요한 자료 및 대응 방법 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평가전 평가기준은 적절성 및 평가위원 평점 60점 이상인자 전환」 이라고 명시된 문서가 인사부서장, 사무총장의 결재까지 완료됨 ○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음. ○ 평가가 종료된 후에,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재평가를 실시 ○ 전환기준의 '평점60점'이라는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받음 ○ 점수평가에서 규정대로 찬반투표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기권, 3명 의사표현 - 2명중 1명은 오전에 이미 평가를 하였고, 재평가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음. ○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소속팀장1명, 타부서 팀장 3명, 타부서 팀원 1명 총 5명으로 구성 ○ 최초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재평가는 부당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받음. 		
상담 결과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설명		

2) 임금 체불

상담사례 1

성별	여자	나이	50대
상담일자	2016년 6월 1일		
상담 내용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체불 진정에 대한 문의		
	<p>숙박업소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신 여성 노동자. 카운터 업무를 보기로 했는데 청소하고 밥도 하고, 쉬는 시간없이 일을 했는데 한달 급여 150만원정도임. 최저임금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했음.</p> <p>그런데 사장빼고 5인이 일을 했는데, 사업주는 4명이라고 우김. 근로감독관 앞에서도 직원과 입을 맞추어 4인이라고 주장고, 직원중에 친척인 사람과 근로감독관이 통화하게 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우겼음.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최저임금위반만 받아들여짐.</p> <p>노동청 조사 중 합의 종용으로 6시간의 휴게시간을 인정하는 사인을 함. 약 850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 하는데, 주변의 성화에 억울하면서도 사인을 함. 잠잘 시간도 없이 CCTV확인하고, 손님 나가면 청소하고, 밥도 해줘야 했음. 그런데 휴게시간 인저어해야 정리가 된다는 합의 종용에 도장을 찍음. 5인 사업장도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임.</p>		
상담 결과	<p>같이 일하던 직원들의 연락처,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임에 대한 증인을 서술 만한 사람을 찾아보도록 함.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같은 내용으로 체불 진정과 소송을 하여 승소한 분과 함께 내방하여 상담함. 현재도 진정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로 경과를 지켜보고 있음.</p>		

상담사례 2

성별	남자	나이	22세
상담일자	2015년 9월 24일		
상담 내용	<p>동구청 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임금체불</p> <p>대전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전화상담. 2014년에 동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건강카페에 근무를 하는 지적장애인노동자. 2015년 1월 퇴사. 카페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이 철수한 상태임. 근무기간중의 임금 일부와 퇴사시 6일의 임금 미지급. 체불진정진행에 대한 문의 2015년 10월 8일 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과 내담자 내방 상담. 임금체불 진정 진행 상담 및 위임 요청. 진정서 작성 및 접수. 이후 노동청 조사 출석을 사업주가 충실히 하지 않고, 진정인만 조사 받은 후 사업주가 지급 의사를 밝혀 면담 진행함. 사업주는 체불금액의 일부 지급만을 주장함. 진정인측이 추후 진행될 법적절차(고소, 소송등)에 대한 부담을 느껴 진정인의 체불액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임. 내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내담자의 부모님과 면담. 사업주가 주장하는 체불액으로 합의하겠다 결정함. 2016년 3월 29일 합의금 135만원 전액 입금확인 후 진정 취하함.</p>		
상담 결과	센터에서 위임받아 임금체불진정 진행 사업주와 합의하여 체불임금 지급 완료		

상담사례 3

성별	남자	나이	60대
상담일자	2016년 4월 18일		
상담 내용	임금체불 확정 후 사업주 잠적, 소액체당금 신청 문의		
	<p>2015년 임금체불 1000만원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피진정인인 신일주택관리 최○○이 실질 대표여서 진정과 소송까지 진행하고 승소했으나 사업주가 잠적했음. 지인의 소개로 소액체당금 청구관련해서 전달받고 사업주확인서, 판결문 등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 신청을 하러갔는데 사업주 확인서상과 실제 사업주 명의가 달라서 대상이 안된다고 안내받음.</p> <p>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아침에 전화했을때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오래걸릴것처럼 하더니 11시쯤 연락와서 발급해놓았으니 가져가라고 함.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방문하니 대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확정증명원 정본,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준비해오라고 함. 그래서 몇달전 신청할때는 대상이 안된다고만 하고 노동청이든 공단이든 조금만 더 신경써서 확인하거나 안내해줬으면 내가 지금까지 안되는줄만 알고 포기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 아니냐, 비정규센터에서 확인 안해줬으면 몰랐을 건데 노동청이든 공단이든 어느쪽에서 업무 태만을 한건지 확인해달라 민원제기하겠다고 하고 옴</p>		
상담 결과	<p>노동청에서 확인한 체불 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상의 명의를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 진정 진행 당시 실질적 대표자가 최○○임을 노동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재발급 요청하여 소액체당금 신청 후 지급 완료됨.</p>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담사례 1

성별	여자	나이	20대
상담일자	2016년 5월 26일		
상담 내용	<p>아르바이트 수습 적용 및 최저임금 문의</p> <p>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함. 최저시급에 못미치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본인을 비롯해 주변에도 많이 있음. 게다가 초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마저도 90%를 적용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음. 구두상으로 6개월만 근무하기로 함.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을 지급해도 되는건지,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게 맞는건지 문의</p>		
상담 결과	최저임금 지급 기준 및 수습기간 적용 기준 안내 및 설명		

상담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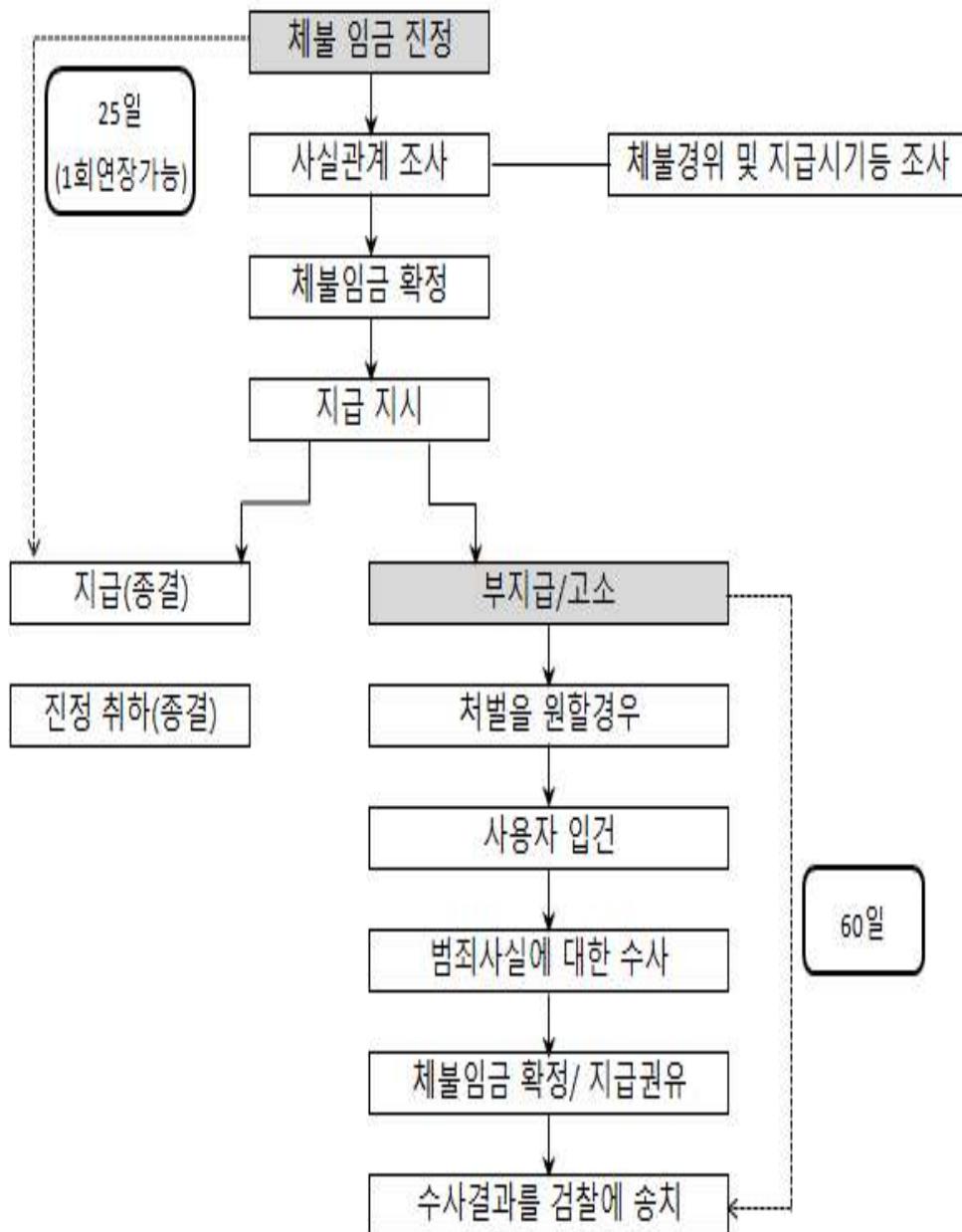
성별	여자	나이	10대
상담일자	2016년 7월 27일		
상담 내용	<p>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함.</p> <p>핸드폰 가게에서 8일 일을 한 학교밖 청소년. 주 5일, 1일 11시간 근무, 핸드폰을 판매하면 실적급도 준다고 했고, 총 임금이 60만원정도 예상됨. 그만 둔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임금을 못 받고 있음.</p> <p>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출근한날 흰 티에 청바지가 복장이라며 사전에 이야기도 없었는데, 당장 사입고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 입고 일을 했음.</p> <p>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이상했음. 사장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알바로 데리고 오면 한사람당 20만원씩 현찰을 주겠다고 하며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음. 제 시간에 출근했는지 확인 하기 위해 매장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전송함.</p> <p>8일째 되는날, 매니저가 오늘 핸드폰 못 팔은 사람이 간식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함. 친구와 둘이서 자기들 끼리 '우리는 여기에 돈 벌러 온게 아니라, 돈 쓰러 나왔나보다' 했음. 그랬더니, 심한 욕설을 하며 당장 때려 치우라고 하면서 으박 지름. 점장이 왔을때, 도저히 무서워서 일을 못 하겠다고 했더니, 다음 달에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해 가방을 챙겨 나왔음. 하지만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게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음.</p> <p>그만두고 나서 들은 이야기로 핸드폰을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강매하게 하고, 급여를 주기 않기로 유명한 가게 였다고 함.</p>		
상담 결과	임금 체불 진정 절차 안내 및 설명, 진정 접수 후 청소년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함.		

상담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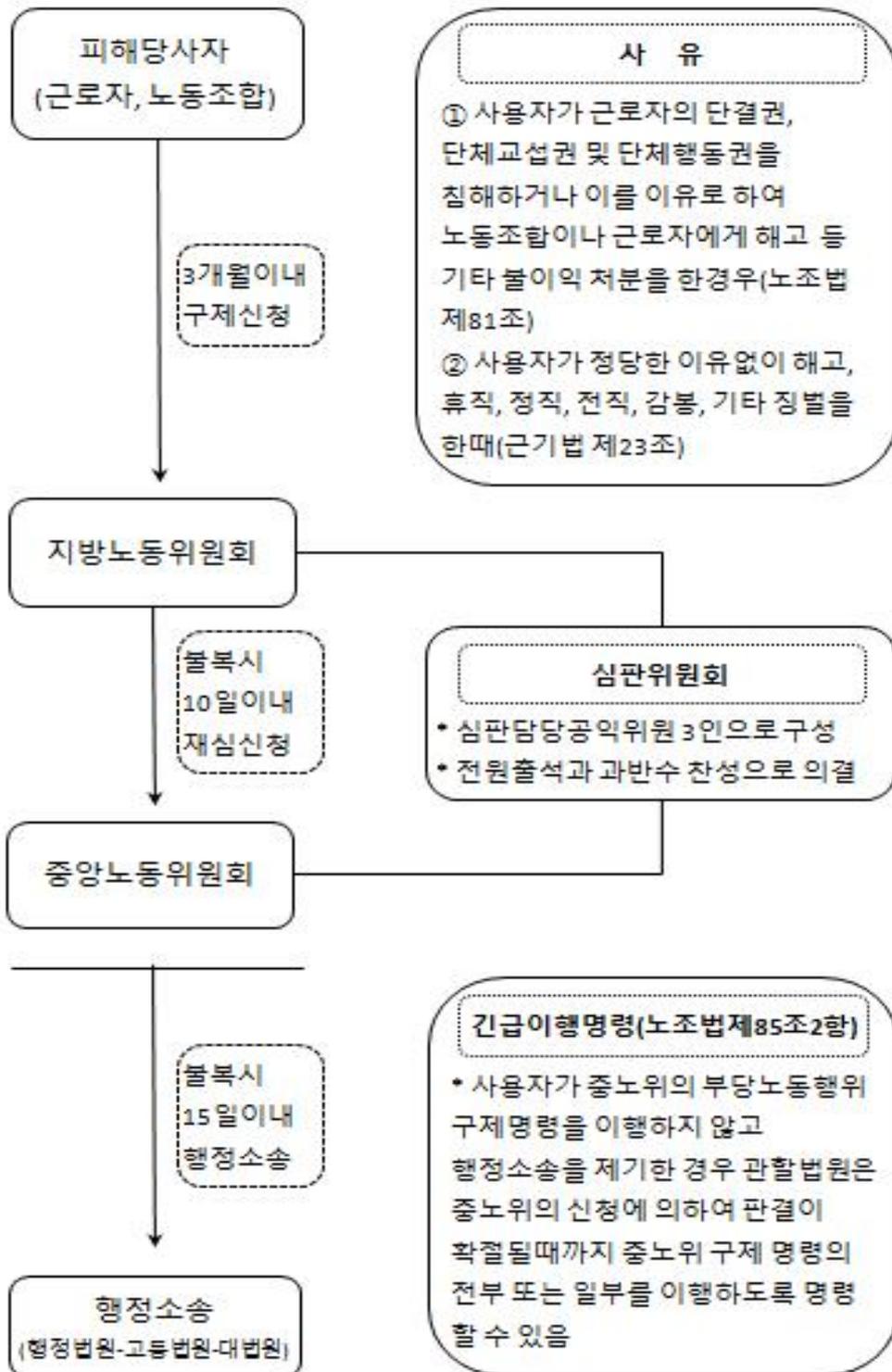
성별	여자	나이	10대
상담일자	2016년 7월 12일		
상담 내용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 손가락 부상, 산재보상 문의		
	<p>청소년 여자쉼터를 통해 상담 진행. 아르바이트 도중 파 절단하는 기계에 손톱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음. 바로 사장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초진시 발생한 병원비만 보상하고 이후 치료비는 자비로 지불하라고 함. 이전에도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들었음. 실질적 대표가 둔산동에 동일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사업주와 면담시 동행 요청함.</p>		
상담 결과	<p>출장 상담시 산재 보상에 대한 안내 및 설명. 사업장 면담 동행하여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 작성받음. 사업주가 고성과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면담 내용 녹취함.</p>		

4. 부록

1) 체불임금 진정 절차



2)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3) 업무상 재해 보상 절차

